

장학금 지급에 관한 운영세칙(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세칙은 상명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제15조(운영세칙)에 의거 천안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 장학금 종류 및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내장학금

제 2 조(장학금의 종류) 본교 학부 과정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명장학금
2. 성적우수장학금
3. 면학장학금
4. 디딤돌장학금
5. 근로장학금
6. 리더십장학금
7. 체육특기장학금
8. 국가보훈장학금
9. 형제·자매장학금
10. 복지장학금
11. 공로장학금
12. 특별장학금
13. 외국인장학금
14. 나눔장학금
15. 사회봉사장학금
16. 동문자녀장학금
17. 해외봉사장학금
18. 글로벌장학금
19. 기금장학금
20. 산업체장학금
21.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장학금
22. 다문화장학금
23. 다자녀장학금
24. 기타장학금

제 3 조 (상명장학금) ①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수혜조건, 장학종류 및 금액은 매년 총장이 정하며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고·시행한다.

제 4 조 (성적우수장학금) ① 성적우수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과·전공 수석·차석장학금: 직전학기 성적이 학과(전공)/학년별 수석·차석인 자에게 지급한다. 세부내용은 붙임2와 같다.
2. 향상장학금: 직전학기 성적보다 평점평균이 1.5이상 상승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비교학기 성적이 학점포기로 변경된 자와 학사경고 대상자는 제외한다.
3. 다전공우수장학금: 다전공 이수자 중 이수학기별 상위 10%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면학A(성적우수): 직전학기 성적이 3.0이상인 자 중 학과장이 추천한 자
 - ②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직전학기 취득학점 중 P/F과목 취득학점이 1/3 초과 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③ 성적우수장학금은 동일학기에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수혜대상자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적용한다.

제 5 조 (면학장학금) ① 면학장학금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면학B: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장이 추천한 자
2. 면학C: 교직원의 추천을 받아 학생경력개발처장이 선발한 자

제 6 조 (디딤돌장학금) ① 품행이 방정하며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중에서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경력개발처장이 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 7 조 (근로장학금) ① 교내 행정부서 및 기관, 학과사무실 등에서 근로를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 근로종료 후 지급하며 근로기간 중 학적변동(휴학,제적,자퇴) 및 근로포기로 인한 중도탈락시 지급할 수 없다.

제 8 조 (리더십장학금) ① 학생자치기구 또는 부속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자 중 그 자격이 인정된 자에게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의 추천으로 학생경력개발처장이 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 9 조 (체육특기장학금) ①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 본교 체육부 운영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 10 조 (국가보훈장학금)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훈청,통일부 등 국가기관에서 교육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자녀 독립유공자(손)자녀로서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새터민 또는 새터민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국가유공자는 등록금 전액을 교비로 지원하며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50%(50%는 국고로 보조함)를 감면한다.

제 11 조 (형제·자매장학금) ① 재적 중인 형제·자매학생 중 재학생에게 모두 지급한다.

② 형제·자매가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동시 재학 중에 학부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 12 조 (복지장학금) ① 학교법인 상명학원이 임용한 본 대학교 교(임)직원(법인, 각급 부속학교 포함)의 직계가족에게 지급하되, 재직 중 사망 및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한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명예) 퇴직한 자의 경우 당시 재적중인 직계가족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 13 조 (공로장학금) ① 국가, 사회 및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총장의 재가를 받아 지급한다.

②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 (특별장학금) ①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이 발생한 경우 부서의 추천으로 지급한다.

제 15 조 (외국인장학금) ① 외국인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본교의 입학조건에 의해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

1.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
2. 교환학생, 복수학위 과정 유학생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6 조 (나눔장학금) ① 나눔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나눔(기초):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분위인 자
2. 나눔(장애): 본인이 장애등급 6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부모, 형제, 자매 중 1인이 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17 조 (사회봉사장학금) ① 사회봉사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사회봉사A: 직전학기(학기 및 방학중) 순수사회봉사단체에서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2. 사회봉사B: 직전학기(학기 및 방학중) 순수사회봉사단체에서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 18 조 (동문자녀장학금) ① 서울 및 천안캠퍼스 학부를 졸업한 동문의 자녀를 대상으로 1개 학기 등록금의 50%를 지급한다.

②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동문자녀는 8개 학기 동안 등록금의 50%를 지급한다.

제 19 조 (해외봉사장학금) ① 해외봉사단에 선발되어 해외봉사에 참가하는 자에게 학생경력개발처장의 추천으로 지급한다.

② 해외봉사 활동기간 중 중도탈락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제 20 조 (글로벌장학금) ① 대학에서 시행하는 해외탐방 프로그램(해외어학연수, 해외연수, 해외인턴십, 해외교환학생, 해외복수학위 등)에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

제 21 조 (기금장학금) ① 기금장학금은 해당기금 운영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제 22 조 (산업체장학금) ①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 23 조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장학금) 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수혜조건, 장학종류 및 금액은 매년 총장이 정하며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고·시행한다.

제 24 조 (다문화장학금) ①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본교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제 25 조 (다자녀장학금) ① 본교 재학 중인 셋째부터 지급한다.

제 26 조 (기타장학금) ① 교내 각 행정부서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경력개발처장의 승인으로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27 조 (지급액) ① 장학금 지급액은 매학년도 총장이 정한다.

제 28 조 (기타) ① 장학생 선발시 직전학기 성적이 해외 교환학생, 인턴 등 현장실습 수업으로 산출되지 않을 경우 백분위 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 성적을 적용한다.

② 캠퍼스 및 학과간 전과의 경우 편입생 기준을 적용한다.

③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등록 후 휴학을 한 경우에만 이월이되며 미등록 휴학의 경우 복학 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단, 군휴학의 경우 증빙 후 지급한다.

④ 기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추천 선정된 2019학년도 1학기 장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붙임1] 장학금 지급 기준

장학금명	장학금액	지급 기간	지급조건		비고	
			직전학기 평점평균	직전학기 취득학점		
상명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수시A	등록금전액	1학기	-	-	신입생장학금 [자세한 사항은 입시요강에 공고]
	수시B	등록금의 50%	1학기	-	-	
	수시C	100만원	1학기	-	-	
	상명사랑 전체 수석	등록금전액	8학기	-	-	
	상명사랑 단과대학 수석	등록금전액	4학기	-	-	
	상명사랑 학과 수석	등록금전액	1학기	-	-	
	수능우수A	등록금전액	8학기	-	-	
	수능우수B	등록금전액	4학기	-	-	
	수능우수C	등록금전액	1학기	-	-	
성적우수 학금 ※중복수혜 불가	학과·전공수석	등록금전액	1학기	3.5 이상	15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입학정원 대비 재학생 30%이하 학과는 지급제외
	학과·전공차석	등록금의 70%	1학기	3.5 이상	15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향상	80만원	1학기	1.6 이상	15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비교학기 성적 학사경고자 제외
	다전공우수	등록금의 50%	1학기	상위 10%	15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면학A (성적우수)	등록금의 40%	1학기	3.0 이상	15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기존 성적우수 장학금
면학장학금	면학B (저소득층)	등록금의 40%	1학기	2.0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기존 면학 장학금
	면학C	100만원	1학기	2.0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디딤돌 장학금	디딤돌	일정금액	1학기	2.0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근로장학금	근로	110만원	1학기	1.6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대가성장학금
리더십 장학금	리더십 (학생자치기구)	일정금액	1학기	2.0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대가성장학금
	리더십 (부속기관)	일정금액	1학기	2.0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체육특기 장학금	체육특기	등록금전액	8학기	1.6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국가보훈 장학금	국가보훈/ 북한이탈주민	등록금전액	8학기	1.6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보훈처, 통일부 (50%) 지급

장학금명		장학금액	지급 기간	지급조건		비고
				직전학기 평점평균	직전학기 취득학점	
형제·자매 장학금	형제·자매	80만원	재학 기간	2.0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복지장학금	복지	등록금전액	8학기	1.6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공로장학금	공로	일정금액	1학기	1.6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포상성
특별장학금	특별	일정금액	1학기	1.6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외국인 장학금	외국인	일정금액	-	-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특별전형 모집요강에 공고
나눔장학금	기초	등록금의 40%	1학기	1.6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장애	80만원	8학기	1.6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사회봉사 장학금	사회봉사A	80만원	1학기	2.0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사회봉사B	40만원	1학기	2.0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지급 2학기부터 미지급
동문자녀 장학금	동문자녀	등록금의 50%	1학기	2.0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해외봉사 장학금	해외봉사	일정금액	-	2.0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해당 프로그램 모집공고 참조
글로벌 장학금	글로벌	일정금액	-	2.0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다문화 장학금	다문화	80만원	8학기	2.0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다자녀 장학금	다자녀	80만원	8학기	2.0 이상	12학점 이상 (4학년 9학점 이상)	

[붙임2] 학과수석·차석장학금 지급기준

1. 학과/학년별 재학생이 입학정원의 30%미만인 학과는 학과수석·차석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시각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실내디자인전공, 세라믹디자인전공의 입학정원은 디자인학부 입학정원의 1/4(올림)로 한다.
2. 대학 편제구조 개편으로 인하여 해당 학과/학년의 입학정원이 없는 경우, 아래 학과는 동일 학과로 보고 해당학년의 재학생 인원을 합산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단과대학	학과
글로벌인문학부대학	글로벌지역학부, 일본어문학과, 중국어문학과, 영어영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독일어문학과, 러시아어문학과
	한국어문학과, 한국어언어문화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전공
	실내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전공
	세라믹디자인학과, 세라믹디자인전공
예술대학	영화영상학과, 영화영상전공
	연극학과, 연극전공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예술경영전공
	사진영상미디어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사진영상콘텐츠학과
융합기술대학	보험경영학과, 금융경영학과, 글로벌금융경영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사회체육학과
공과대학	컴퓨터시스템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스마트정보통신공학과
	환경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그린화학공학과
	정보보호공학과, 정보보안공학과

※ 글로벌지역학부, 사진영상미디어학과, 글로벌금융경영학과, 그린화학공학과로 복학한 학생 중 해당 학과/학년의 입학정원이 없는 경우, 복학 전 소속 학과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 서남대 특별편입학으로 입학정원 및 복학 전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1학기 학과수석·차석장학금 장학생 선발 시 7학기 이수자는 3학년 재학생과 합산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4. 학과수석·차석장학금 동순위자 발생 시 **장학금 지급규정 제7조(우선순위)**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5. 총점 산출 시 **학사에 관한 규정 제33조(학점인정)**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6. 학과수석·차석장학금의 승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승계기준
승계가능	취득학점 미달, 이수학기 초과, 성적 미산출자, P/F 교과목 1/3 초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 등 수혜자격 미달로 인한 장학금 수혜 불가자 발생시
승계불가	학적변동(자퇴, 조기졸업, 학석사 연계졸업 등) 및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한 장학금 수혜 불가자 발생시